

◎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143호

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 ①

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2호, 99.2.2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999. 12.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설비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2항제1호중 「별표 39에서」를 「별표 39-2에서」로 한다.

제206조제2항제1호중 「별표 39에서」를 「별표 39-3에서」로 한다.

제213조의2 제1항제1호중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을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21]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로 하고, 제7호 가, (3)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 적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mm] [mm]	4,190-(28×sd)	8,380-(28×sd)	12,580-(28×sd)	16,770-(28×sd)	20,960-(28×sd)	25,160-(28×sd)

또한 (4)의 「50mm에서 100mm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을 「50mm 이상 100mm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을 「내측폭 이하로 할 것」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의 (2) 「인장강도는 70kg/mm 이상의 것일 것」을 「인장강도는 70kgf/mm(686N/mm) 이상의 것일 것」으로 하고, 제5호 「가」 중 「인장강도는 30kg/mm 이상의 강선일 것」을 「인장강도는 30kgf/mm(294N/mm) 이상의 강선일 것」으로 한다.

별표2 제1항제1호 「나」 중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mm 이상 10kg/mm 미만, 신장률 20% 이상, 도전율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알루미늄 성형 단선 [인장강도가 6kgf/mm (59N/mm) 이상 10kgf/mm (98N/mm) 미만, 신장률 20% 이상, 도전율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의 「가」 중 「[별표 1] 부표 14」를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으로, 제3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25」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25 "인열시험"]」으로 한다. 또한 제2항제1호 「가」 중 「도체는 KS D 5201 "동 및 합금의 판 및 조" 3.6에 규정하는 C 1100 TC-0인 것」을 「도체는 KS D 5201(1994)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3.6 도전율 및 부피저항률」에 규정하는 C 1100 RC-0인 것」으로 하며, 「오로 한다」를 「오 으로 한다」로 한다. 제5항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부표 1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으로 하며, 「나」 중 「개서」를 「반죽하여」로, 「KS M 3155 "연질 염화비닐 콤파운드"의」를 「KS M 3156(1997) "연질 폴리염화비닐 콤파운드"의」로 한다. 「나」 중 「개서」를 「반죽하여」로, 「KS M 3156 "연



법령 안내

질 폴리염화비닐 룸파운드”의 “6.5 가열 변형시험”의」를 「KS M 3156(1997) “연질 폴리염화비닐 룸파운드”의 “7.5 가열 변형시험”의」로 하며, ‘타’ 중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1][부표 19]」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9 “가 엘수축시험”]」으로 한다. ‘마’ 중 「KS M 6518」을 「KS M 6518 (1996)」로 하며, 제6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사. (6) (4)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6.(6).(나) “내마모성”의」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 (1)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 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로 한다.

별표4 제2호 ‘가’ 및 제4호 ‘가’의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로 하고, 제6호 나 중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1] 1. 사(6)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6.(6) “기계적강도”의」로 한다.

별표5 제1항제1호 ‘나’ 중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mm² 이상 10kg/mm² 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알루미늄 성형 단선[인장강도가 6kgf/mm² (59N/mm²) 이상 10kgf/mm²(98N/mm²) 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의 ‘가’ 및 제3호의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시험”]」으로 하며, 제2항제3호의 「한국공업규격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 합금판에」를 「KS D 5301(1995) “이음매 없는 동 및 동 합금판에」로 한다.

별표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완성품은 KS C 3339(1997) “CATV용(급전결용)알루미늄 파이프형 등축 케이블”의 “6.3 도체저항”, “6.4 내전압”, “6.5 절연저항” 및 “6.9 시스의 인장”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4.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7 제2항제1호 ‘나’ 중 「(인장강도가 6kg/mm² 이상 10kg/mm² 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인장강도가 6kgf/mm²(59N/mm²) 이상 10kgf/mm²(98N/mm²) 미만. 신장률이 20% 이상. 도전율이 61%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 ‘가’ 및 제4호 ‘가’, 제3항 제3호 ‘가’, 제4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으로 하고, 제3항제4호 ‘가’ 중 「1.5kg/mm²」를 「1.5kgf/mm² (14.7N/mm²)」로 한다.

별표8 제1호 표의 인장강도중 「31.5kgf/mm² (309N/mm²) 이상」으로 하고, 「200kg 이상」을 「200kgf/mm² 이상(19.60N/mm² 이상)」으로, 「180kg 이상」을 「180kgf/mm² 이상(17.70N/mm² 이상)」으로, 「170kg 이상」을 「170kgf/mm² 이상(16.70N/mm² 이상)」으로, 「125kg 이상」을 「125kgf/mm² 이상(12.30N/mm² 이상)」으로, 「90kg 이상」을 「90kgf/mm² 이상(8.83N/mm² 이상)」으로, 「70kg 이상」을 「70kgf/mm² 이상(6.86N/mm² 이상)」으로, 「30kg 이상」을 「30kgf/mm² 이상(2.94N/mm²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제3호의 ‘나’ 표의 인장강도중 「6kg 이상」은 「6kgf/mm²(59N/mm²) 이상」으로, 「12kg 이상」은 「12kgf/mm²(118N/mm²) 이상」으로 한다.

별표9중 「한국공업규격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의 재료, 구조 및 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를 「KS C 2810(198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의 “4.1.2 온도상승”, “4.1.3 헤이트 사이클” 및 “5.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0 제1항중 「한국공업규격 KS C 1706 “제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기계용) 또는 한국공업규격 KS C 1707 “제기용 변성기(전력수급용)”의 내전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를 「KS C 1706(1982) “제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기계용)”의 “5.2.2 내전압” 또는 KS C 1707(1982) “제기용 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중 「한국공업규격 KS C 1706 “제기용 변압기(표준용 및 일반제기용)”의 내전압에 규정하는」을 「KS C 1706(1982) “제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제기용)”의 “5.2.2 내전압”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별표14 제2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으로 한다.

별표16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는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보호전용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 개폐기”의 “6.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보호전용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 개폐기”의 “7.시험방법”에 의해 시험 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17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는 KS C 4612(1990) “고압전류제한퓨즈”的 “6.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612(1990) “고압전류제한퓨즈”的 “7.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였을 때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18 제2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1)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1) “시험조건”에 규정하는】으로 하고, ‘나’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절연체 및 외장의 구분	실온에서의 값		가열후의 잔을	
	인장강도 (kgf/mm ²)	신장률 (%)	인장강도 (%)	신장률 (%)
절연성	0.4(3.9)	50	50	50
외장	0.6(5.9)	50	50	50

()는 N/mm 단위로 환산한 것임

별표19 제1항중 「한국공업규격 KS B 6231 “압력 용기의 구조”의 “2.1 재료일반” 및 “2.2 재료의 사용제한”에」를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5.1 재료 일반” 및 “5.3.1 재료의 사용제한”에」로 하고, 제2항중 「한국공업 규격 KS B 6231 “압력용기의 구조”의 “2.3 재료의 허용응력에」를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2 설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에」로 하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체는 원통형으로 그 전원도는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8.8.1 내압을 받는 몸체의 전원도”에 적합할 것.
2. 통관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6.1.5 최소 제한 두께”, “6.1.6 부식 여유 및 마찰여유” 및 “6.5.1 내압을 받는 몸체”에 적합할 것.
3. 경관의 모양은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8.9 성형경관의제작 공차”에 적합할 것.
4. 경관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6.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관” 및 “6.5.4 중고면에 압력을 받는 경관”에 적합할 것.
5. 평판의 두께는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6.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8)”에 적합할 것.
6. 구멍은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6.9.5 몸체 및 경관에 설치하는 끼어 넣음 플랜지를 갖는 구멍”, “6.9.6 성형경판에 보강하지 않는 구멍”, “7.6.4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 및 KS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3 보강을 요하지 않는 구멍”, “6.9.1 구멍의 모양, 치수 및 보강”, KS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5 봉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보강의 유효범위”, KS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6 봉통판 또는 경판의 두께 및 노즐넥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부분의 면적”, KS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 보강”의 “3.1.11 두개 이상의 구멍을 균접하여 만드는 경우의 보강”, KSB 6714(199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3.1.7 보강재의 강도”, KS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9.3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에 적합할 것.

7. 용접 이음의 효율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2 용접 이음 품질제수”에 준할 것.
8. 주요 재료의 수치의 허용차는 KS B 6733(1995) “압력 용기(기반규격)”의 “5.1(4) 재료의 치수 허용차”에 준할 것. 또한, 제4항중 「한국공업규격 KS B 6231 “압력용기의 구조”의 “4.9관의 강도” 및 “9.1 노즐용 관의 관 플랜지”」를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7.1(2) 노즐용 관의 프렌지” 및 KSB 6281(1988)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4.4.9 관의 강도」로 한다.

별표20중 「한국공업규격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을 「KS B 6216(199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별표21중 「36.5kHz(준첨두치)」을 「36.5dB(준첨두치)」로 한다.

- 별표22 제1항제1호 ‘가’ 내지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400, SS490 또는 SS540
 -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다. KS D 3529(1984)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 강재”
 - 라. KS D 3752(1986)에 규정하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SM 55C
 - 마. KS D 3707(1982)에 규정하는 “크롬강 강재”중 SCR430
 - 바. KS D 3711(1982)에 규정하는 “크롬 몰리브덴강 강

법령 안내

재” 중 SCM435

제3항제1호의 ‘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 나. KS D 3566(199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PS400, SPS490 또는 SPS540 제4항중 「한국공업규격 KS D 3557」를 「KS D 3557(1992)」로 한다.

별표23 제1호 ‘가’ 내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 다. KS D 3566(199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PS400, SPS500 또는 SPS490
- 라. KS D 3517(1995)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 · 14종 · 15종 · 16종 또는 17종

별표25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 SS490
- 2. KS D 3504(1988)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20A, SD30B, SD35에 한한다)

별표26 제1항중 「한국공업규격 KS F 430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전주” 중 재료·제조·굽힘강도 및 굽힘강도시험의 제1종에」를 「KS F 4304(1997)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7 제조방법”, “4.2 휨강도” 및 “8 휨강도의 시험”의 1종에」로 하고, 제2항제1호의 ‘가’ 내지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 나. KS D 3515(1997)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2종 · 3종 또는 4종
- 다. KS D 3566(199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PS400, SPS500 또는 SPS490
- 라. KS D 3517(1995)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 · 14종 · 15종 · 16종 또는 17종
- 마.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5kgf/mm²(539N/mm²) 이상, 항복점이 40kgf/mm²(392N/mm²)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또한 제3호의 「한국공업규격 KS F 4302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전주”의 재료 및 제조에,」를 「KS F 4304(1997)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로 한다.

별표28 제1호의 ‘가’의 표중 파괴강도의 단위를 「kg/mm²」를 「kgf/mm²」로 하고, ‘나’의 「천선이 있는 단주」를 「지선이 있는 단주」로 한다.

별표29 제1호 ‘나’ 중 「인장강도가 6kg/mm² 이상 10kg/mm² 미만」을 「인장강도가 6kgf/mm²(59N/mm²) 이상 10kgf/mm²(98N/mm²) 미만」으로 하고,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별표20 제1항제1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별표 1]부표 14(1)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부표 14] (1) “시험조건” (가)의 그림에 규정하는」로 하고, 제2항제1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1)시험조건” (가)에 규정하는」으로, 동항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4 “전기기체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시험통칙”에 규정하는 방우형(防雨形)의 시험방법에 의하여」를 「KS C 0904(1995) “전기기체기구의 방수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에 규정하는 “4.5 보호등급 3(방우형)에 대한 시험”의 시험방법에 의하여」로 한다.

별표32 제3항의 제2호 ‘나’ 중 「30.000kg의 하중을」을 「30.000 kg(294.2kN)의 하중을」로 한다.

별표33 제1항제2호 ‘가’ 및 제2항제2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부표 14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별표34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 ‘가’, 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 규정에」로 한다.

별표3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완성품은 KS C 8311(1990) “커버 나이프 스위치”的 “3.1 온도상승”, “3.6 내열”, “3.5 단락차단”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37 제2항제1호중 「KS C 6104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의」를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로 하 고, 동항제2호중 「KS C 6104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KS C 6105(1981)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구조 및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에 적합한 것일 것」을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KS C 6105(1981)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한다. 또한 제3호중 「KS C 6104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을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한다.

별표3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9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02조 제2항(기술기준 제23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10조제2항제1호(제2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플로어덕트 및 몰드

가. 공통사항

(1) 재료

- (a) 플로어 덕트는 KS D 3555(1991) “강판용 열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HRSI의 것일 것.
- (b) (a)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은 KS D 3555(1991) “강판용 열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HRSI의 것, KS D 3512(1996)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SSAC의 것.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 KS D 3501(1994) “열간압연 열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SPHC의 것이나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일 것

(2) 구조

- (a) 내면은 전선을 끼워 넣을 때 또는 갈아 끼울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매끄러울 것.
- (b) 금속제 플로어덕트 등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겹고 하고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합성수지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겹고하게 접속할 수 있을 것.
- (c) 끝부분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

려울 것(금속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면풀림이 되어 있을 것)

(d) 용접한 부분 또는 결합한 부분은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e) 금속표면은 도금 · 도장 기타 적당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내식 알루미늄 합금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플로어덕트

(1) 구조

- (a) 똑바른 것일 것.
- (b) 윗면의 중앙선상에 전선인출공이 있는 것일 것.
- (c) 치수는 [부표 37] 가.에 적합할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다. 금속제 몰드

(1) 1종 금속제 몰드

- (a) 구조
 - i) 똑바른 것일 것.
 -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 iii) 조영제에 쉽고 견고하게 볼일 수 있는 것일 것.
 - iv) 베이스와 캡이 완전히 결합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 v) 치수는 [부표 37] 나. (1)에 적합할 것.

(b)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 할 것.

(2) 2종 금속제 몰드

- (a) 구조
 - i) 똑바른 것일 것.
 -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 iii)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 iv) 치수는 [부표 37] 나. (2)에 적합할 것.

(b)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라. 합성수지제 몰드

(1) 구조

- (a) 똑바른 것일 것.
- (b) 조영제에 쉽고 견고하게 볼일 수 있는 것일 것.
- (c)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법령 안내

(e) 흄의 폭 및 깊이는 60mm 이하. 두께는 $1.2 \pm 0.2\text{mm}$ 일 것

(2) 절연내력

전기용품기술기준 15 [부표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3) 내연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5 [부표 5]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4) 내열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5 [부표 4]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5) 결합성

길이 약 300mm의 시료를 취하여 본체와 커버를 분리한 상태로 $70 \pm 2^\circ\text{C}$ 의 온도로 3시간 유지하고 실온까지 자연스럽게 냉각시켰을 때 본체와 커버가 완전히 결합한 것.

(6) 충격강도

길이 약 300mm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5°C 의 온도로 1시간 유지하고 본체와 커버를 결합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고정시켜 직경이 20.64mm이며 무게가 약 36g의 강구를 1m의 높이에서 다음 개소에 낙하시켰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본체와 커버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e) 길이 방향의 중앙부에서의 커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커버의 결합부

(e) 길이 방향의 끝에서 10mm의 커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커버의 결합부

(7) 정하중 강도

(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한 후 합성수지판 또는 폴리(이하 (7)에서 「시험편」이라고 한다)을 몰드의 내부에 장착하고 이 몰드를 통상의 사용상태로 취부한 후 시험편의 중앙부에 몰드의 아래쪽 끝으로부터 10cm의 위치에서 길이방향으로 10kg(98N), 길이 방향 및 연직방향에 수직된 방향으로 10kg(98N), 연직방향으로 15kg(150N)의 하중을 각각 1분간 하였을 때 시험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몰드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시험편은 축방향의 길이가 약 50cm. 두께가 8mm 이상이고 그 단면의 형상을 몰드의 단면과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2. 플로어 덱트 등의 부속품(금속제 전선관용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류용을 제외한다)

가. 공통사항

(1) KS C 8438(1994)[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의 "7.주요부의 재료" 또는 합성수지일 것.

(2) 구조

전기용품기술기준 14 1(1) 및 16 1.나에 의할 것.

나. 금속제 카프링

(1) 구조

(e) 치수는 [부표 37] 다.에 적합할 것.

(e) 플로어덱트용의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을 것.

ii.) FF6 플로어덱트 및 FF7 플로어덱트에 사용하는 카프링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덱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ii.) FF6 플로어덱트 또는 FF7 플로어덱트에 사용하는 카프링에 있어서는 플로어덱트와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스토퍼가 있을 것.

(e) 1종 금속제 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볼일 수 있을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몰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e) 2종 금속제 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볼일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 금속제 코넥터

(1) 구조

(e) 치수는 [부표 37] 라.에 적합할 것.

(e) 플로어덱트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플로어덱트와 접속하는 축에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e) 1종 금속제 몰드용 박스 코넥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몰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ii.) 박스와 접속하는 부분은 면돌림이 되어 있을 것.

(e) 2종 금속제 몰드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볼일 수 있고 전선 관 등과의 접속구멍이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라. 금속제 부싱

(1) 구조

- (a) 치수는 [부표 37] 마.에 적합할 것.
 (b) 1종 금속제 폴드용 부싱은 양끝이 매끄러울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금속제 엘보 및 금속제 캡

(1) 구조

- (a) 치수는 [부표 37] 바.에 적합할 것.
 (b) 전선관과의 접속방식이 나사꽂음형인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용의 엘보에는 전선관과 접속하는 측에 KS B 0223(1986) “전선관 나사”에 규정하는 암나사가 내어져 있을 것.

- (c) 플로어덕트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 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d) 1종 금속제 폴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e) 2종 금속제 폴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끌일 수 있을 것.
 (f) 2종 금속제 폴드용 엔드 캡의 두께는 1.5mm 이상어야 하고 폴드와 접속하는 개소는 나사 멈침 등에 의하여 폴드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금속제 박스

(1) 구조

- (a) 치수는 [부표 37] 사.에 적합한 것.
 (b) 다음 개소에는 KS B 0201(1984)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4(플로어덕트용 박스로서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있어서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 i) 플로어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
 ii) 폴드용의 박스에 있어서는 커버를 조이는 부분
 (c) 플로어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멍은 블랭크 워셔로서 덮

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일 것.

- ii)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체의 커버 및 이와 결합하는 마커사이트를 갖추고 있을 것.
 i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iv) 플로어덱트를 2열 또는 3열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내부에 주철제·강제의 세페리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세페리터를 갖추고 있고 플로어덱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플로어덱트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9mm 이상일 것.
 (d) 1종 금속제 폴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할 것.
 (e) 2종 금속제 폴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고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끌일 수 있을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

사. 금속제 티 및 크로스

(1) 구조

- (a)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b) 1종 금속제 폴드용 티 및 크로스에 있어서는 베이스와 캡을 완전하게 결합하고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 (c) 치수는 [부표 37] 아. 및 자.에 적합한 것.

(2) 내식성

전기용품기술기준 16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

아. 기타의 합성수지제 부속품 전기용품기술기준 14.8에 준할 것

별표39-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9-2 금속제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기술기준제204조제2항제1호(제234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241조제1항제1호·제254조제3항제1호 단서·제257조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제26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3조제1항제9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금속제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강제 전선관

KS C 8401(1997) “강제전선관”의 “4.굽힘성”, “5.내식성”, “7.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1, 표2 및 표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겉보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법령 안내

9.2.3 및 9.2.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알루미늄 전선관

KS C 8419(1972) “알루미늄 전선관”의 “2.제조방법”, “3. 치수 및 중량”의 표의 “판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살 두께, 안지름”, “4.1 결모양” 및 “4.3 내골곡성”的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39-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9-3 가요전선관

기술기준 제206조제2항제1호(제234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제26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요전선관과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4.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5.1 가요관의 내면”, “6.치수” 표 2 “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7.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용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4.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5.1 가요관의 내면”, “6.치수” 표 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7.재료 b”的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3.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59(1997)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4.성능”, “5.구조”, “6.보양 및 치수”, 그림 4~15 및 “7.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40 제1항 및 제2항중 「한국공업규격 KS C 8451」을 「KS C 8451(1989)」로 하고, 제2항제1호중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3] 5.②. (2)에」를 「전기용품 기술기준 03 5. 가. “구조(2)에”로, 동항제2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5. 가. (3)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5. 가. “구조(3)에”로 하고, 동항제3호의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5. 가.(6), (7), (8), (9), (10), (11) 및 (12)와 나(1)에」를 「전기용품 기술기준 03 5. 가.“구조(6)”, (7), (8), (9), (10), (11) 및 (12)와 나”정격(1)에」로 하고, 동호 ‘나’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5. 가. (5)」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5. 가.“구조(5)”」로 한다. 또한 동항제4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부표 1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부표 1]의」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3] 5. 다. (3), 마. ②

에 적합하고 칼받이 금구가 있는 것의 인장강도는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5. 다. (3), (4) 및 (5) (② 및 ③을 제외한다)에 적합할 것」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3 5. 다. “성능(3)”, (마), ②에 적합하고 칼받이 금구가 있는 것의 인장강도는 전기용품기술기준 03 5. 다. “성능(3)”, (4) 및 (5) (② 및 ③을 제외한다)에 적합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 7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부표 2 (1)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부표 2] (1)의」로, 동항제8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부표 4」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부표 4]」로 하며, 동항제9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3] 부표 5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3 [부표 5]의」로 한다.

별표41 제1호 ‘가’ 중 「KS D 3506 “용융 아연도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SPGCZ 27,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에 규정한 스테인리스 강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에」를 「KS D 3506(1995) “용융 아연도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SGHCZ 27 또는 SGCCZ27, KS D 3698(1992)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스테인리스 강판, KS D 5201(1994)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에」로 하고, 동호 ‘나’ 중 「KS D 5201에」를 「KS D 5201(1994)에」로 한다. 또한, 제2호 ‘가’ 의(3)중 「KS C 3004(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8. (2)에 따라」를 「KS C 3004(1998)[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9.내전압” “b.공중”에 따라」로 하고, 동호 ‘나’ 의(2)중 「KS C 3004의 8. (2)에 따라」를 「KS C 3004(1998)의 “9.내전압” “b. 공중”에 따라」로 하며, 동호 ‘나’ 의(3) 중 「KS C 3004의 8.(2)에 따라」를 「KS C 3004(1998)의 “9.내전압” “b.공중”에 따라」로 한다. 동호 ‘다’ 의 (1)중 「KS C 3004의 “6”에 따라」를 「KS C 3004(1998)의 “7. 도체저항”에 따라」로 하고, 동호 ‘다’ 의(2)중 「KS 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를 「KS D 9502(1992) “염수분무 시험방법”에」로, 「KS C 3004의 “6”의 규정에」를 「KS C 3004(1998)의 “7.도체저항”의 규정에」로 한다.

별표42 제1호중 「[별표 39]에 적합한」을 「[별표 39-3]에 적합한」으로 한다.

별표43 제1항제1호 ‘가’ 중 「[별표39]」를 「[별표39-3]」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내압방폭형의」를 「내압(耐壓)방폭형의」로 하고, 동호의 ‘나’ 중 「20kg/cm²의」를 「20kg/cm²(196N/cm²)의」로 하고, 동항제3호의 ‘가’ 중 「[별표 39]에」를 「[별표 39-3]에」로 한다. 또한 제2항제4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접합면 및 접합면의 다듬질」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

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2.1 접합면” 및 “8.2.3 접합면의 마무리”로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표의」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표의」로 하며, 동항제5호의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나사꽃이 부분의 틈새의 깊이에 적합한 것일 것」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3.4 나사끼음부”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용기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1.1 용기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한다.

별표44 제4호 내지 제5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8450」를 「KS C 8450(1981)」로 한다.

별표45 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D 3602」를 「KS D 3602(1981)」로 하고, 제4호의 표중 「한국공업규격 KS D 3602」를 「KS D 3602(1981)」로 하며, 제6호의 「P는 하중(kg/m²를 단위로 한다.)」를 「P는 하중(N/m²를 단위로 한다.)」로 한다.

별표46 46종 「기술기준 제213조제3호」를 「기술기준 제21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47 제1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L 2002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 한국공업규격 KS L 2004」를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 KS L 2004(1997)」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공업규격 KS B 0161」를 「KS B 0161(1988)」로 한다. 제2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L 2002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 한국공업규격 KS L 2004」를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 KS L 2004(1997)」로, 동항제4호중 「한국공업규격 KS B 0161」를 「KS B 0161(1988)」로 한다. 제3항제1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를 「KS C 0906(1997)」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기본체까지의 도선인입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로 한다. 또한 동항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종류중 내압(耐壓) 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내압방폭구조에 적합한것」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5.방폭구조의 종류”중 내압(耐壓) 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8.내압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표시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 등의 표시”」로 한다. 제4항제1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한 단자함」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한 “7.6.2 단자상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기 본체까지의 도선인입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로 한다. 동항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종류중 내압(內壓) 방폭 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한국공업규격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10.내압방폭구조”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표시에 준하여」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 등의 표시”에 준하여」로 한다. 제5항제1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단자함」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7.6.2 단자상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기 본체까지의 도선인입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로 한다. 또한 동항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종류중 유입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5.방폭구조의 종류”중 유입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9.유입방폭구조”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방폭구조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

법령 안내

률」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4 방폭구조 등의 표시”에 준하여 방폭구조에 대한 표시문」로 한다. 제6항제1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단자함」을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에 규정하는 “7.6.2 단자상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기 본체까지의 도선인입에」를 「단자함으로부터 전기기계기구 본체까지의 도선의 인입부분은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7.6.3 단자상자에서 전기기기 몸체로의 도선 인입부”」로 한다. 또한 동항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와 종류등 안전증가 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안전증가 방폭구조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5.방폭구조와 종류” 중 안전증가 방폭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로 KS C 0906 (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통칙”의 “11.안전증가 방폭구조”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906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의 통칙”의 방폭구조의 표시에」를 「KS C 0906(1997)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의 통칙”의 “9.방폭구조등의 표시”에」로 한다.

별표49 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료 및 구조는 KS C 3326(1990) “선박용 전선”的 “4.재료 및 품질” 및 “5.구조”에 적합할 것.
3. 완성품은 KS C 3326(1990) “선박용 전선”的 “6.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3.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50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조는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판로”의 “6.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5. 완성품은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판로”의 “8.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3.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51 제4호 ‘가’ 중 「한국공업규격 KS C 8449 “트롤리버스판로”의 “5.구조”」를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판로”의 “6.구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완성품은 KS C 8449(1997) “트롤리버스판로”의 “8.시험방법(금속제판로와 트롤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

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52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료는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的 “6.재료”에 적합한 것.
3. 구조는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的 “5.구조”에 적합한 것.
4. 완성품은 KS C 3134(1982) “절연트롤리장치”的 “7.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성능”에 적합할 것.

별표53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는 KS C 3609(1998) “엘리베이터용 이동케이블”的 “6.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3609(1998) “엘리베이터용 이동케이블”的 “8.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54중 「한국공업규격 KS C 2401 “절연용 비닐튜브”的 시험방법에」를 「KS C 2401(1985) “절연용 비닐튜브”的 “7.시험방법”에」로 한다.

별표56 제1호 ‘사’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에」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절연성능

온내용의 것은 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4 “절연성능시험”] (1) 및 (2)의 시험을, 옥외용의 것은 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4 “절연성능시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또한 제3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부표 5]의 원쪽 란에 열거한 측정개소(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 5] (1)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 5]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의 원쪽 란에 열거한 측정개소(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 (1)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의」로 한다.

별표57 제1항제3호중 「KS C 3004의 8. (3)에 의하여」를 「KS C 3004(1998)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9.내전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3004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3.설모양 및 5구조의 시험을 하여 다음에 적합할 것」을 「KS C 3004(1998)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4.설모양”

및 6구조”의 시험을 하여 다음에 적합할 것”으로 하고, 동호 ‘나’ (1)중 「KS C 3101」를 「KS C 3101(1995)」로 하며, 「KS C 3210」을 「KS C 3210(1987)」로 한다. 제3항 제2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로 하고, 동항제3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한다. 제4항제1호의 ‘가’ 내지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KS D 3507(1985)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
- 나. KS D 3562(1989)에 규정하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다. KS D 3570(1984)에 규정하는 “고온배관용 탄소강 강관”
- 라. KS D 3583(1992)에 규정하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 마. KS D 3576(1984)에 규정하는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동항제2호 ‘가’의 (1)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KS C 2349(1978)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천레이프”
 - (2) KS C 2344(1978)에 규정하는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 (3) KS C 2347(1986)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접착테이프”
 - (4)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동항제3호 ‘가’ 중 「한국공업규격 KS M 3337에」를 「KS M 3337(1997)에」로 한다. 제5항 중 「한국공업규격 KS D 3507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를 「KS D 3507(1985)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로 한다. 제6항제2호 ‘가’ 및 동항제3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58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3에 적합한」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8전기온상선”에 적합한」으로 한다.

별표59 제1호 ‘아’ 내지 ‘자’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에 규정하는」으로 하고, 제3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 4] 1, 2, 6 (가) 및 7(의)」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8[부표 4 “결연성능 시험” (1), (2), (6) (가) 및 (7)의]」로 하며, 제4호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5]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8 [부표 5 “온도한도”에]」로 한다.

별표60 제1항제2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0804」을 「KS C 0804(1997)」로 한다.

별표61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별표62 제1호중 「한국공업규격 KS M 3079 “폴리아미드수지(나일론)”」을 「KS M 3079(1979) “폴리아미드수지(나일론)”」로 하고, 제3호중 「한국공업규격 KS C 300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왕복식 내마도성외」를 「KS C 3006(198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10. 내마도”의」로 한다.

별표63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3항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한」을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한」으로 한다.

별표64 제2호의 ‘가’ 및 제3호의 ‘가’ 중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14에」를 「전기용품기술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도전율의 시험”]에」로 한다.

별표65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는 KS C 3612(1987) “X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4. 재료 · 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3612(1987) “X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3.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68중 「수전점에서 3%로 한다」를 「수전점에서 3%이하 일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